

2024~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2024. 군산교육계획 [3-1-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균형감 있게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변동, 학교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추진계획

-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교원 위원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 인 사람 -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육전문직원(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 현직 교원은 학교장(기관장) 추천 필수이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공문 접수 (전직: 개별 접수)
경찰 위원	-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공문 접수 (경찰서장 추천)
전문가 위원	- 판사·검사·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특수교육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별 접수
학부모 위원	-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 분야별 인원수 및 구성비율은 신청 인원 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동적임

※ 당연직 위원 및 경찰 위원은 별도 심사 없이 기관협의를 통해 위촉함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구분	내 용
공 통	- 위원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참석 가능일에 심의위원회에 자주 참석하지 않은 경우(직무태만)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기타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 해임(축)권자인 교육장이 결정
학부모	-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위촉 이후 전학 포함)

○ 접수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접수(발송일 **2월 15일 17:00까지** 인정)

제출내용	제출기한	제출처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접수자는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도 함께 제출	2024. 2. 15.(목) 17:00	- 추천 접수: 업무관리시스템 (수신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대상: 현직 교원, 학부모 위원, 경찰 위원 - 개별 접수: 학교폭력담당자 업무메일 (gombau@jbedu.kr) - 대상: 전직 교원·교육전문직, 전문가 위원

① (학교) 추천접수

- 학교별 추천 인원수는 **제한 없음**
- 학부모 위원은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 및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로 추천
- 학교 추천 시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식1, 2, 3>만 제출

② (개인) 개별접수

- 전직 교원·교육전문직, 전문가 위원은 [서식 1]의 하단 “기관장 추천서” 란은 미기재 가능
- 개별 접수 지원자는 <서식1, 2, 3>와 자격이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경찰 위원

- 경찰 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이므로 <서식1, 3>만 제출함

④ 공통사항

- **중복접수, 서류 미비 혹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이 지급됨
- 심사 서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⑤ **모집공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⑥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학사 김경주, 063-450-2676)

○ 추진일정

구분	일정
학교 안내	2024. 2. 1.(목)
서류 접수	2024. 2. 2.(금) 09:00 ~ 2. 15.(목) 17:00
서류 심사	2024. 2. 16.(금)
선정결과 통보	2024. 2. 19.(월) 17:30,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위원 위촉일	2024. 2. 22.(목) 15:30(예정)

□ 기대효과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반을 마련하여 원활한 심의 진행
- 역량 있는 위원 위촉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 운영

4.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계획

- 심의위원회 참석 의지 및 활동 가능 요일, 기존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정도(예-학교폭력전담기구 매회 참석) 등 -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2024 . 2 . .

성명: (서명)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4~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발,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6. 2. 28.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 2 .

작성자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참고자료1: 학부모 위원 안내문>

학교마크	2024~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2024. .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①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 2. 28.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4. 2. 2. (금) ~ 2024. 2. 15. (목)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https://office.jbedu.kr/jbgse/M010601/view/5805589?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00.

〇 〇 학 교 장

<참고자료 2> 심의위원회 안내자료(학부모 위원 안내용)

2024~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안내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 3.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 위원회

질문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 위원의 위촉기간: 2024. 3. 1. ~ 2026. 2. 28. (2년)
- 위원의 구분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위원
 - 경찰공무원 위원
 - 전문가 위원(변호사, 의사, 상담사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학부모 위원
- 위원의 정수: 총 35명 이내(학부모 위원 1/3 이상)

질문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자격은?

군산교육지원청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로서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질문 군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정 방침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 제출한 자에 한해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학교급(초·중등)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및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질문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역할 및 의무는?

-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춰 주 1~2회 정도 참석
-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 직무로 알게 된 비밀, 피.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참고자료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공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요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